

## 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20. 9. 8.(화)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 5. 회의내용

####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에 의거, 의결사항 '가', '나', '다'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에 해당됨.

#### ② 의결사항

##### 가. 방송광고 법규위반 행정처분 사업자의 의견제출에 관한 건 (2020-48(서)-222)

- 제2017-43차 방송통신위원회(2020.7.28.)에서 의결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주)조선방송의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원안과 같이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조선방송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6,500만원

나.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0-48(서)-223~226)

-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제4항·제5항 및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주)채널에이 등 4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채널에이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1,500만원
(주)조선방송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500만원
(재)시민방송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850만원
(주)케이비에스엔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1억2,000만원

다.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0-48(서)-227)

- 「방송법」 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 한 (주)씨채널방송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씨채널방송	「방송법」 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1,000만원